2019년 방문요양급여 이용료 안내

[2019년 월 이용료 한도액] -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% 추가 됩니다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19년	145만6400	129만4600	124만700	114만2400	98만800	55만1800

[2019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]

분류	금액(원)	분류	금액(원)	분류	금액(원)
30분 이상	14,120	120분 이상	36,720	210분 이상	50,190
60분 이상	21,690	150분 이상	41,730	240분 이상	53,940
90분 이상	29,080	180분 이상	46,130		

[방문요양,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]

서비스 제공시각	금액(원)
18시 이후 22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
22시 이후 06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	